

산업융합 일자리 창출

「산업융합촉진법」이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서 금년도 산업정책의 핵심 어젠더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10.3.26(금) 10:00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에는 산학연 융합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산업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 산업융합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하였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5년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산업간 융합전략으로 보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둘째, 「산업융합촉진법」이 신산업 관련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별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억제하고, 매년 별도 입법 없이도 신산업 창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융합규제 상시적 해결체계,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 도입 등을 통해 융합촉진을 저해하는 기존 법령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경부내에 산업융합촉진기획단(가칭)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발굴하는 한편, 규제위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불합리한 규제 해소 추진하고, 정부지정기관이 인정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기준규격 제정시까지 임시인증하고,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한편, 동 회의는 i) 정책보고서 발표(딜로이트 컨설팅), ii) 기업설문조사 결과발표(대한상의), iii) 산업융합촉진법(안) 주요 내용(지식경제부) 발표 후, 참석자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딜로이트(Deloitte) 컨설팅은 정책보고서 발표를 통해 美·日·EU 등 선진국은 “융합의 시대”에 대비한 산업전략, 법·제도 정비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인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정책’(미국, 2002), ‘유럽 지식사회를 위한 융합기술 정책’(유럽, 2004), ‘신산업 창조전략 및 FOCUS21’(일본, 2004) 등이다. 일본(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EU(FP7), 미국(미국경쟁력강화법) 등은 산업융합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들을 제정·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며,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신산업을 촉진하기에 기존 법령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된다.

[융합 신시장 창출 장애 사례]

- ⊗ **당뇨폰(IT+BT)** : '04년 LG전자가 혈당측정·투약관리 등이 가능한 당뇨폰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포기
- ⊗ **헬스케어 의료(IT+BT+의료)** : 착용만으로 혈압 등 측정가능한 헬스케어 의료기 개발되었으나 의료제품, 의료기기간의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활성화 제약
- ⊗ **트럭지게차(차량+건설기계)** : S 중공업이 지게차와 트럭을 결합한 트럭 지게차 개발하였으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 승인 4개월 이상 지연 (60여억원 손해)

실제 딜로이트의 조사결과, 기존 법령 및 규정상 한계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융합 신시장 선도를 위해 지속적 산업융합 정책추진이 중요하며, 특히 산업융합 촉진에 가장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존 법령상 한계 개선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어, 대한상의가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업계 설문 결과에 따르면(주관기관 및 조사일정 : 대한상의 / '10.3.10~'10.3.15, 조사대상 : 업종별 국내기업 1,346개 (회수기준, 대기업 383개사, 중소기업 920개사)), 응답기업의 91.5%가 융합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등 산업계의 융합법 제정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이(41.0%) 융합제품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 지연 등 애로를 실제 경험하였고 응답하였다. 융합제품 출시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를 지적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안) 주요내용 발표

를 통해, 정부는 선언적·상징적인 법률이 아닌 산업계 애로 및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법안 제정을 위해, 융합 신제품 발전단계에 따른 정책지원 및 융합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중이다. 단계로 ① 융합 아이템 발굴 → ② 융합 R&BD 지원 → ③ 상용화 → ④ 시장 활성화이다.

특히, 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기존 업종별 법령 및 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데 법안의 중점을 둘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기존 법령·제도상 한계로 융합 신제품 창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융합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임시인증 제도 등 도입한다. 법령·제도不在로 인한 융합 신산업 촉진에 장애가 없도록 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 별도 입법 없이도 신산업 지원추진한다.



[산업융합촉진법(안) 주요 내용]

㉔ 융합신제품 발전단계별 지원

• (1단계, 융합아이템 발굴) 전문가 파견, 연구장비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융합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 (2단계, 융합 R&D지원) 융합형 R&D 과제 우선지원, 융합제품 개발시 특허활용 알선, 중소기업 융합사업 지원* 등

* 중소기업이 융합사업 계획서를 지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정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3단계, 융합신제품 상용화) 융합현장 규제·애로 등 해소, 융합신제품 인증*촉진

* 정부지정기관이 인정하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기준규격 제정시까지 임시인증하고,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

• (4단계, 융합신제품 시장활성화) 융합신제품 시범사업 실시 등

㉕ 융합 인프라 구축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융합특성화대학(원)설치 및 지원

* 각 부처 산업융합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전반의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적 추진체계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등)

한편,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은 이제 융합은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넘어 학문, 예술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법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한승 전무는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상 규제로 인해 u-Health관련 제품 활성화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장준근 나노엔텍 대표이사는 대기업은 융합 트렌드를 읽고 잘 대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홍남 ETRI 원장은 앞으로 산·학·연 융합연구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허 및 연구평가 등 측면에서 융합형 공동연구 참여자간 역할정립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중 산업융합촉진법안 법제처 제출을 목표로, 법안 내용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입법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보완함으로써, 산업융합촉진법이 향후 법령이나 규정상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융합 신제품이나 신시장 창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